

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9월 15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이재일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 제3조제4호 조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려는 것임과,
- 동 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은 행정자치부 준칙안 부칙 제3조에서 명시한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된 문안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동 제정조례안 제3조제4호의 “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”이라는 조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인 문안인 “건전한 문화·예술·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”으로 조문을 수정.
- 동 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인 “파주시통·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”가 행정자치부 준칙안 부칙 제3조에서 명시한 “읍면개발(동정)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”와 상이하게 작성된 문안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4호중 “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”을 “건전한 문화·예술·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행	수정안
제3조(원칙) 주민자치센터(이하 “자치센터”라 한다)와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 1.-3. (생략) 4.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 5. (생략)	제3조(원칙) ----- ----- ----- ----- 1.-3. (현행과 같음) 4. 건전한 문화·예술·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 5. (현행과 같음).
부칙 ①(생략)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과주시통·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 ③(생략)	부칙 ①(현행과 같음) (삭제) ②(현행과 같음)